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콘텐츠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생활화학제품 등의 제조 · 수입 · 판매자가 생활화학제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와 규제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또한, 살생물제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생활화학제품 등 안전관리 1
1.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 4
1.1. 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 4
1.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4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8
2.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8
2.1.1.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 8
2.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9
2.2.1.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9
2.2.2. 제품의 신고 및 승인 13
2.2.3. 제조·수입 금지 등 제재 19
3. 살생물제 안전관리 22
3.1. 살생물물질 안전관리 22
3.1.1. 물질의 승인 등 22
3.1.2. 판매 금지 등 제재 28
3.2.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29
3.2.1. 제품의 승인 등 29
3.2.2. 표시기준 37
3.2.3. 판매 금지 등 제재 39
3.3.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40
3.3.1.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40
3.3.2. 판매 금지 등 제재 43
4. 피해 구제 제도 45
4.1.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 45
4.1.1. 구제 제도 알아보기 45
4.1.2.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 등 47
4.1.3. 결정 등에 대한 불복 50

1.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

1.1. 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

1.1.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개념 및 종류

“생활화학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의 개념

▪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개념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분류	품목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여가용품 관리제품	•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살생물제”란?

살생물제의 개념

▪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

구분	개념
살생물물질	•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살생물제의 종류

▪ 살생물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별표 1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구분	종류	
살생물물질	• PHMG, PGH, CMIT/MIT, 라벤더오일, 에탄올 등	
살생물제품	살균제류 (소독제류)	• 살균제, 살조제
	구제제류	• 살서제,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살충제,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기피제
	보존제류 (방부제류)	•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건축자재용 보존제, 재료·장비용 보존제, 사체·박제용 보존제
	기타	•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살생물처리제품	• 항균필터, 항균 처리된 플라스틱, 방부 처리된 가구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법 적용 제외 대상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

-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에 따른 처리물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위생용품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3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

2.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2.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2.1.1.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실태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수입·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위해성 평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 해당 제품의 명칭
- 해당 제품의 위해성
-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제조시설 소재지
- 해당 제품에 사용된 다음의 화학물질의 명칭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 √ 살생물물질
-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위해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위해성 평가에 따른 제품 지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본문).

※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단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호).

2.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2.2.1.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개념 및 종류는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의 설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 안전기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안 되는 화학물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 용기·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 포함)
-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안전기준의 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2).

적용 제형	물질명
분사형	•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 염화벤잘코늄류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전 제형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용기 또는 포장의 안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3).

구분	내용
겉모양	• 외관은 깨끗해야 하며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부위가 없어야 함 • 구조는 변형·파손 등이 없어야 하고, 내용물이 새지 않아야 함 •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형 제품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적합한 용기를 사용해야 하며, 분사 후 흐름현상이 없어야 함 •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이 식품의 용기, 포장, 겉모양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식품으로 오인되거나 혼동되지 않아야 함
강도 및 누수	• 용기 강도 시험을 실시할 때 마개 또는 몸체 등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아야 함 • 누수 시험을 실시할 때 제품의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함 • 캡슐형 제품의 포장으로 사용되는 물에 녹는 포장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20℃의 물에서 30초 이상 내용물이 유지되어야 함 √ 표준시험조건[온도(23±2)℃, 상대습도(50±5)%]하에서 최소한 300N의 기계적 압축강도를 견뎌야 함

※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위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안전기준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승인 대상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및 제6항 참조).

※ 위의 내용은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품의 신고 및 승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및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

구분	제재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의 사항을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 함께 기재 가능)로 표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 제품의 명칭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사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및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 • 중량 또는 용량 •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 제품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제품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조연월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표시(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제품만 해당)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표시사항

표시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위반 시 제재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2호).

> ※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는
>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화학제품정보-위반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의 제한

포장·광고 시 준수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무독성

√ 환경·자연친화적

√ 무해성

√ 인체·동물친화적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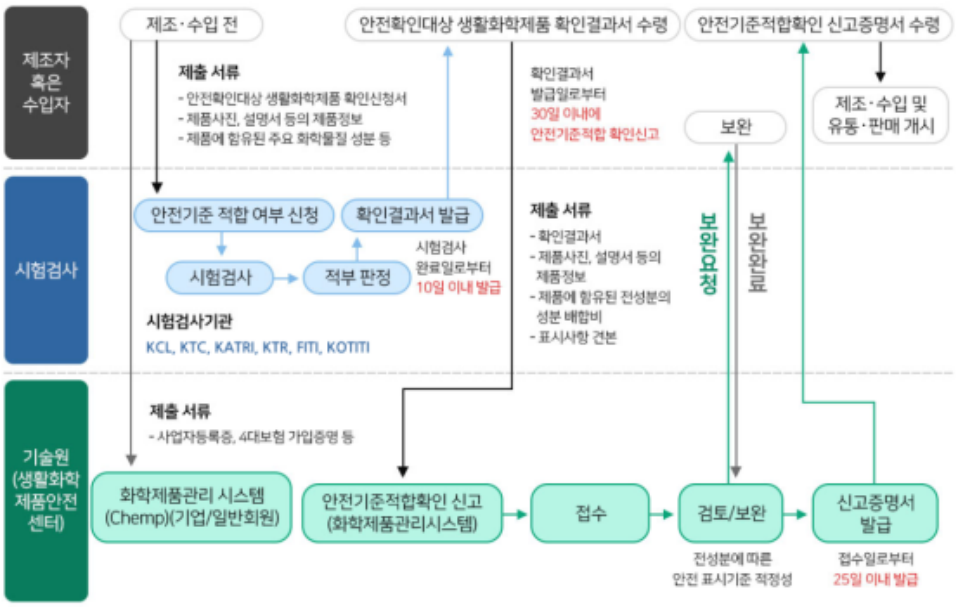
위반 시 제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2.2.2. 제품의 신고 및 승인

신고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 절차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www.keiti.re.kr/)-주요사업-환경보건안전-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 부여되는 "안전기준 확인" 마크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제품명, 제형(劑形),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에 따른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견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을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만 해당)

안전기준 적합확인 변경신고

▪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8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다음의 사항 중 안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

√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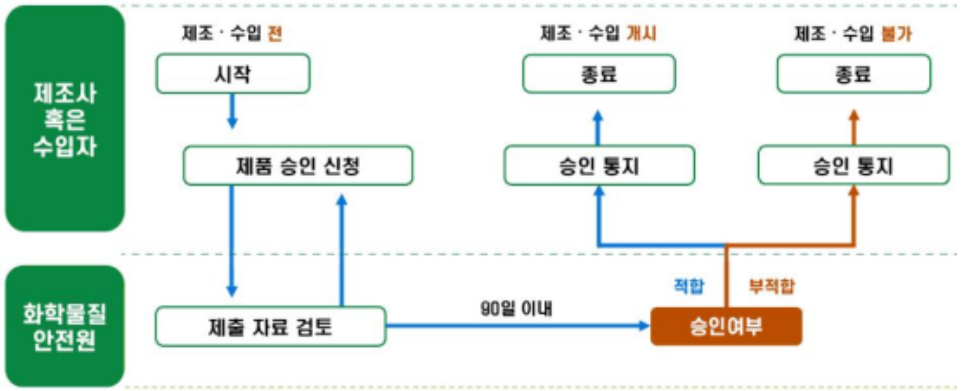
위반 시 제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절차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업무안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품의 승인 신청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알아보기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제3조, 제10조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 1 참조).

- 살균제품: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구제제품: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기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
- 함유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주된 기능을 하는 함유물질(이하 "주성분"이라 함)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포함)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 주성분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제품의 변경승인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항·제5항).

구분	변경 내용
변경승인사항	•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배합비율 및 용도 • 주성분의 제조원(제조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포함)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 • 제품의 효과·효능 등의 유효성 • 주성분과 해당 제품의 안전성 •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 • 제품과 함유물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의 방법·기준 및 결과 • 제품의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제품의 폭발·화재·노출 시의 응급조치사항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및 제조·보관시설의 소재지
변경신고사항	• 승인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 의무

▪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 승인 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제5호, 제57조제1항제1호의2·제1호의3 및 제60조제1항제3호·제8호).

구분	제재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57조제1항 후단).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정보의 공개

공개 대상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 그 밖에 해당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및 중점관리물질,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사항

> ※ 신고·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화학제품정보-생활화학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3. 제조·수입 금지 등 제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제조·수입 금지 제품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다시 확인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품질관리 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품질관리 의무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위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제품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 적합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신고를 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판매 등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 판매 등이 금지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회수명령 등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생활화학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 판매 등이 금지 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및 포상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 미기재, 안전기준확인마크 미표시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참조].

3. 살생물제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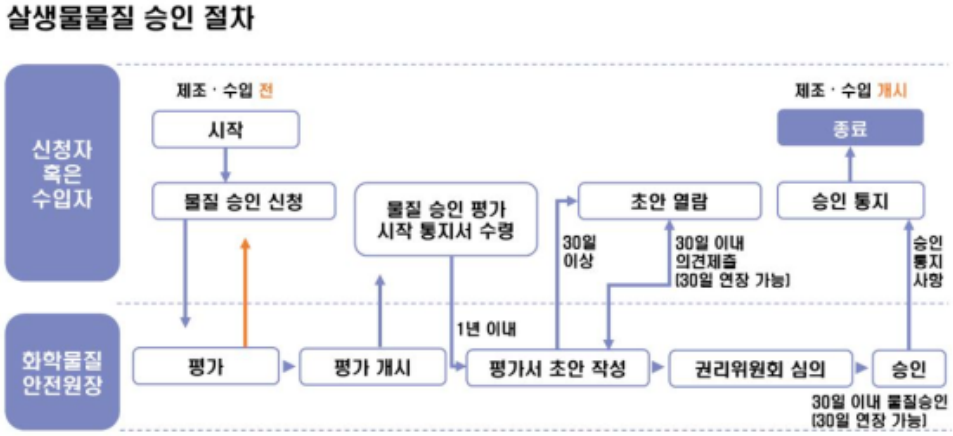
3.1. 살생물물질 안전관리

3.1.1. 물질의 승인 등

※ 살생물물질의 개념 및 종류는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물질의 승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절차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업무안내-살생물물질·제품>

물질승인 의무

▪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물질승인의 제외 대상

▪ 살생물물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2조제1항 단서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정하는 경우
2.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경우
3.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인 경우
4.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
5. 위 2.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함)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위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않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 √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
  - √ 기존살생물물질의 순도 범위
  - √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 살생물제품 유형별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질승인의 기준

▪ 물질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않을 것
-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물질승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물질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종류	유효기간
• 일반적인 살생물물질	10년
•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7년
• 유효기간이 7년인 살생물물질의 종류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5년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 물질동등성의 인정

-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함)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전단).
- 기준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전단).
-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후단).

물질승인의 신청

▪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

-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의 자료
  -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 효과·효능
  - √ 분류 및 표시
- 물질승인 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취급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확인서(자료의 개별 제출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살생물물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살생물물질 승인 및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살생물물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3호·제3호의2 및 제56조제1항제7호·제8호).

구분	제재
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물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물질동등성을 인정 받아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물질승인을 받은(물질동등성을 인정 받아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물질승인의 변경 및 취소

물질승인의 변경

▪ 살생물물질에 대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제1호·제2호·제4호, 제15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구분	변경 내용
변경승인사항	•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효능 • 살생물물질의 명칭 • 제조시설 소재지 • 용도 • 제조 공정 등 제조방법 • 살생물물질이 유지해야 하는 순도(純度) 범위 • 살생물물질에 들어있는 것이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 사용자 범위
변경신고사항	•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

물질승인등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살생물물질의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함)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구분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 처분
•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수입 중지 처분

위반 시 제재

▪ 살생물물질의 변경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4호, 제56조제1항제9호, 제57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구분	제재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살생물물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57조제1항 후단).

승인된 살생물물질 정보의 공개

공개 대상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 살생물물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 ※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살생물제-살생물물질-승인 살생물물질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2. 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물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물질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

-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함)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
-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위반 시 제재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살생물물질의 회수명령 등

판매 등 금지 물질의 회수명령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살생물물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물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살생물물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물질승인을 받은(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고된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및 포상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에서 살생물물질의 승인번호 미기재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제1항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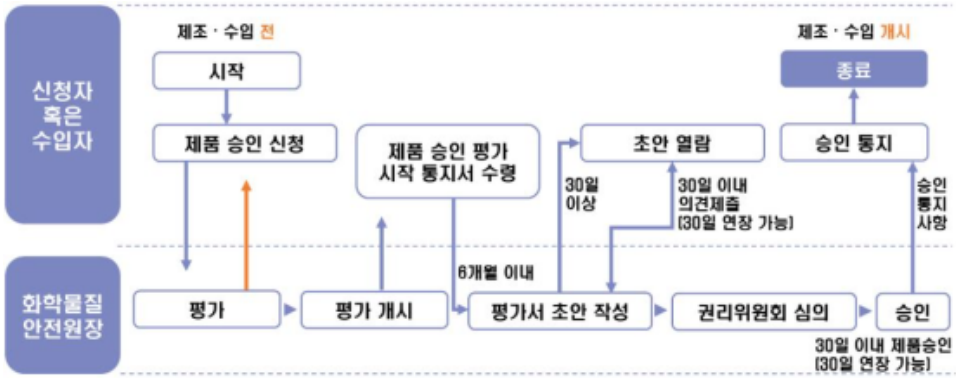
3.2.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3.2.1. 제품의 승인 등

※ 살생물제품의 개념 및 종류는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s://nics.me.go.kr/)-업무안내-살생물물질·제품>

제품승인 의무

▪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품승인의 제외 대상

▪ 살생물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1. 과학적 실험용·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제품인 경우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
4. 위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수입·판매·사용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제품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511호, 2018. 3. 20.) 제3조제1항].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부터 2년 이내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제품승인의 기준

▪ 제품승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 물질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 √ 지정·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
-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함)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않을 것
-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않을 것
-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 √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 √ 내용물로 인해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 √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변형되지 않을 것
  - √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 √ 그 밖에 「살생물제품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 ※ 그 밖에 제품승인의 구체적인 기준은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에 따른 제품승인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제20조제5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종류	유효기간
•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10년
•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5년
• 유효기간이 5년인 살생물제품의 종류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3년

▪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 제품유사성의 인정

•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함)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전단).

• 기준살생물제품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전단).

•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후단).

제품승인의 신청

▪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의 자료
  - √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 인체·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정보

√ 효과·효능

√ 분류·표시 및 포장

- 제품승인 기준의 완화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 사용상 주의사항 및 폐기방법
- 국내외 사용 및 규제정보
- 기준에 적합한 안전용기 또는 포장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 기준의 준수 현황 또는 계획
- 제조를 위탁하는 자의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살생물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위해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제품승인의 특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이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참조).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나노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않을 것

※ 살생물제품 승인 및 특례 신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제품의 품질관리 의무

▪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제조·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

▪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 ※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및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살생물제품의 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5호·제5호의2, 제56조제1항제10호·제11호 및 제60조제1항제8호).

구분	제재
제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품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품유사성을 인정 받아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유사성을 인정 받아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외)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제품승인의 변경 및 취소

제품승인의 변경

▪ 살생물제품에 대해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6항제1호·제3호·제5호,

제23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7호 및 제20조).

구분	변경 내용
변경승인사항	1. 유해성·위해성 정보 2. 효과·효능 3.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4.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물질 중 위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가 함께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8. 제형, 표준 사용량과 사용방법, 유통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및 용도
변경신고사항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

제품승인등의 취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함)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구분	제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취소 처분
•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않은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수입 중지 처분

위반 시 제재

▪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6호, 제56조제1항제12호, 제57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60조제1항제4호).

구분	제재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살생물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단서).

※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후단 및 제57조제1항 후단).

승인된 살생물제품 정보의 공개

공개 대상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 살생물제품유형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 살생물제품의 분류·표시 및 포장
-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old.keiti.re.kr/)-살생물제-살생물제품-승인 살생물제품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2. 표시기준

살생물제품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살생물제품 표시사항

-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 중량 또는 용량
- 승인번호
- 유해성
- 효과·효능
-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 함유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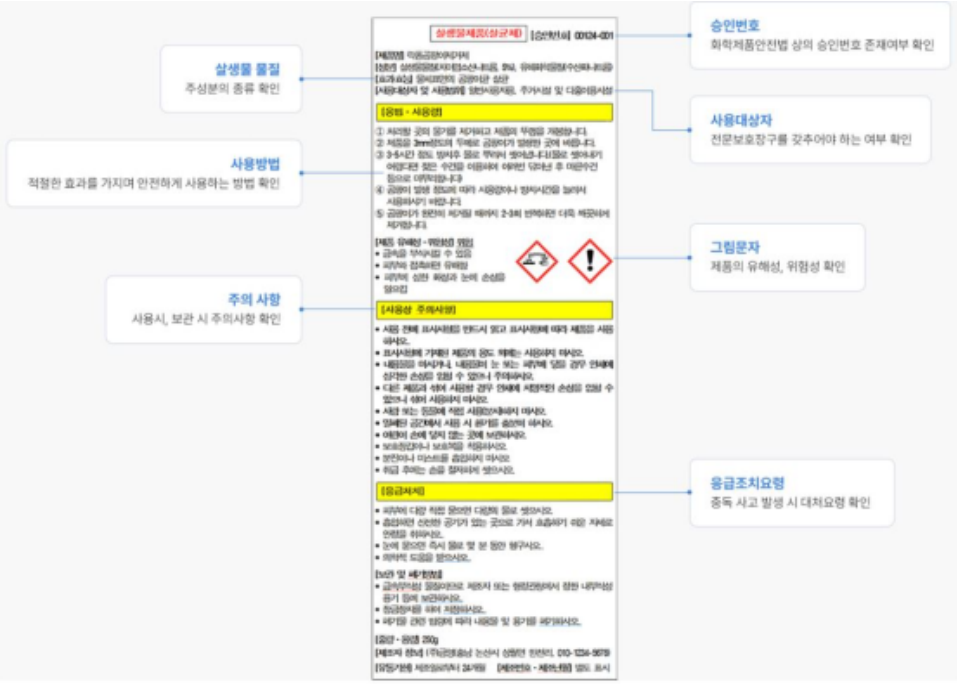
표시방법

▪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살생물제품의 표시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살생물제품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출처: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살생물제안전사용-살생물제 안전사용 방법-살생물제품 라벨 읽는 방법>

위반 시 제재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1호).

살생물제품 표시의 제한

포장·광고 시 준수사항

▪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 무독성

√ 환경·자연친화적

√ 무해성

√ 인체·동물친화적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는 문구

-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 제품의 효과·효능(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을 알리는 문구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호).

3.2.3. 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제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제품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3호).

- 살생물제품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함)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호).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6호).

살생물제품의 회수명령 등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살생물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살생물제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살생물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고된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및 포상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에서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미기재,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참조].

3.3.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

3.3.1.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의 개념 및 종류는 이 콘텐츠 <생활화학제품 등 알아보기-생활화학제품 등의 이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해 다음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 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위반 시 제재

▪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2호).

※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위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표시사항

▪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살생물처리제품 표시사항
•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방법

▪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위반 시 제재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제13호).

※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않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511호, 2018. 3. 20.)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승인 유예 대상인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승인 유예 대상 살생물제품과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승인 유예 대상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

※ 살생물제품의 승인 유예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살생물제 안전관리-살생물제품 안전관리-제품의 승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2. 판매 금지 등 제재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 금지 제품

▪ 누구든지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4호).

▪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위의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판매를 중개(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구매를 대행해서는 안 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경우

살생물처리제품의 회수명령 등

판매 등 금지 제품의 회수명령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

- 판매 등이 금지된 살생처리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경우
- 새로운 위해성 등이 보고된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조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살생물처리제품의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의무
>
> •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에 따라 보고된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
>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7호).

▪ 위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회수,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3호).

※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조치명령의 이행 결과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9호).

※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및 포상

소비자가 생활 환경 주변에서 살생물처리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누락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정보마당-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참조].

4. 피해 구제 제도

4.1. 살생물제품 피해의 구제

4.1.1. 구제 제도 알아보기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란?

▪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함)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참조).

>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제도
>
> Q.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나서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피해 구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A.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
>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해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12조제1항 참조).
>
>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s://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대상 등

구제급여의 종류

▪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항).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무자력인 경우

-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

▪ 구제급여의 종류별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참조).

종류	지급 기준·범위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장애일시보상금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1급: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의 28,50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2급: 기준 중위소득의 20,52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3급: 기준 중위소득의 13,68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4급: 기준 중위소득의 6,840/1,000에 해당하는 금액
장례비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에 해당하는 금액
사망일시보상금	•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위 장례비의 1,500/100에 해당하는 금액

※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제1항).

※ 피해등급의 기준

• 피해등급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피해등급	장애내용	전신 장애율
사망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	
1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초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80% 이상
2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60% 이상
3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중증도 장애가 남은 사람	40% 이상
4급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20% 이상
등급 외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장애가 고정되지 않은 사람	20% 미만 또는 판정불가

• 피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애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 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금의 면제

• 살생물제품피해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1).

•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2).

4.1.2.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 등

구제급여의 지급 절차

피해구제 절차도



<출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서비스(https://www.ehtis.or.kr/onestop/)-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급여 지급 신청

▪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함)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 참조).

구분	내용	
공통 제출자료	• 살생물제품의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실제 사용한 살생물제품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검사서류 등 살생물제품피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개별 제출자료	진료비 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지급 진료비 신청의 경우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 등 진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미지급 진료비 지급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의 경우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신 장애율 산정에 관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신 장애율이 표시된 진단서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례비 신청의 경우	•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급여 지급 심사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감정 등을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3항).

※ 급여 지급 신청이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2항).

급여 지급결정 및 통지

▪ 위원회는 급여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등급에 대해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본문).

▪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4항 단서).

급여 지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구제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제1항 본문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8).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제1항 단서).

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신청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1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5제1항).

▪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위원회에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2항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5제3항).

> ※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원스톱 통합 콜 시스템(☎1555-4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제급여의 지급 취소 및 중단 등

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등

▪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 갱신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3항).

▪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제4항).

급여 지급중단

▪ 위원회는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1항).

▪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려는 경우 미리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

▪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그 급여액은 환수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제3항).

진료비 지급 일시 중지

▪ 위원회는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7, 제48조의18제1항 전단 및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3제1항).

- 위원회의 진찰, 검사, 조사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원회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하려는 경우 진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13제2항 및 제3항).

▪ 위원회는 진료비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8제1항 후단).

4.1.3. 결정 등에 대한 불복

지급결정 등에 대한 불복 신청

재심사 진행 절차도



<출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서비스(https://www.ehtis.or.kr/onestop/)-피해구제제도안내-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재심사 청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사람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1항).

- 구제급여 지급 신청 각하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재심사청구서(「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재심사 청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의10제1항).

재심사 청구 기간

▪ 재심사 청구는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2항 단서).

재심사 결과 통지

▪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3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3제3항 단서).

> ※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 관련 재심사 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원스톱 통합 콜 시스템(☎1555-45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